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21 선고 2021가합5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플러스담당변호사 송운서, 김세란, 최유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채희현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중 C을 대위한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피고와 C,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3. 22.

체결된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619,84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619,842원 및 이 중 158,422,718원에 대하여는 202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67,197,124원에 대하여는 202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D 사이에 체결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512,1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배경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D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D의 언니이다.

나. 피보전채권 발생

원고는 C, D에 대한 49,618,000원 가량의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위 C, D을 상대로 이 법원 2021차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21. 2. 26. C, D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내렸다(이하 ‘제1피보전채권’이라 한다).

E은 C, D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84,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C, D을 상대로 이 법원 2020차52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2020. 5. 29. 한 지급명령이 C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이어서 E은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20가단5972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이 법원은 2020. 10. 27. D이 C과 공동하여 E에게 위 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E으로부터 위 C,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여 2021. 4. 26. 이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양수를 원인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2021. 8. 9. 위 승계집행문 등본이 C, D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제2피보전채권’이라 하며, 제1, 2피보전채권을 함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다. C, D의 부동산 매각 및 피고의 부동산 매수

C, D은 2019. 3. 5. C 명의의 서울 강북구 F아파트 G호를 46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2.자 매매(매매대금222,000,000원)를 원인으로 2019. 5. 15.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제1720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 D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C은 수원지방법원에 2020개회3183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21. 3. 9.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D은 춘천지방법원에 2020개회236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21. 4. 13. D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2. 소송실태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양도 경위, 제1피보전채권의 양도인 H, 제2피보전채권의 양도인 E과 원고의

긴밀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양도는 소송행위를 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자체가 무효이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양수한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채권양도계약서나 통지서 등 채권양도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은 2021. 12. 22.인데 원고의 제1피보전채권

양수일[지급명령신청서(갑1-2)에 따르면 원고는 H으로부터 제1피보전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은 늦어도 원고가 이에 기하여 C,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1. 2. 26.(갑1-2)

이전으로, 제2피보전채권 양수일은 늦어도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E의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2021. 4. 26.(갑1-1) 이전으로 각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소 제기일과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 양수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이 사건 소 제기를 염두에 두고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E과 원고가 사채업자와 채권추심업자로서 십수년 간 업무적으로 협력해온 관계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달리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핀다.

가.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는 소송물이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51394 판결 등 참조) 설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액수가 실제 채권 액수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소송물의 관점에서 동일한, 즉 그 발생근거인 법률원인이 동일한 채권인 이상 그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액수를 초과한 부분만 분리하여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피보전채권에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된 액수를 초과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그 채권이 개인회생채권과 소송물의 관점에서 동일한 채권인 이상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소송도 역시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2023. 1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르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원고의 C, D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 D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을 취소한다는 것이고,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원인은 위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 D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0. 5. 12. 작성된 D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9)에는 제1피보전채권과 동일한 발생원인(“2018. 1. 1. H 양수금 30,000,000원”)에 따른 채권(채권 현재액이 “49,618,000원 및 이 중 원금 잔액 49,618,000원에 대한 2021. 2. 27.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제2피보전채권과 동일한 발생원인(“2015. 5. 1. E 양수금 84,000,000원”)에 따른 채권(채권 현재액이 “84,000,000원 및 이 중 원금 잔액 금 84,000,000원에 대한 2020. 10. 28.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D에 대한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D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한편 2020. 9. 2. 작성된 C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제1피보전채권과 동일한 발생원인(“H 양수금 30,000,000원”)에 따른 채권(채권 현재액이 “49,618,000원 및 이 중 원금 잔액 49,618,000원에 대한 2021. 2. 27.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제2피보전채권과 동일한 발생원인(“2015. 5. 1. E 양수금 35,000,000원”, 위 35,000,000원이 제2피보전채권 84,000,000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2023. 12. 18.자 준비서면 2면 참조)에 따른 것으로 신고된 채권(채권 현재액이 “35,000,000원 및 이 중 원금 잔액 금 35,000,000원에 대한 2020. 8. 27.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을9). 원고는 C에 대한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C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4. C을 대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핀다.

가. 기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의 효력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또한 같은 법 제566조 본문과 동일한 취지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어떠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는 소송물이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회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피보전채권에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된 액수를 초과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과 소송물의 관점에서 동일한 채권인 이상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소송도 역시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2020. 9. 20. 및 2023. 1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르면,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를 수탁자로 하고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서 C, D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C, D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 D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취지이다.

수원회생법원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2024. 3. 5. C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동안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없었으므로(현저한 사실) 위 면책결정은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제627조, 제13조 참조).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이미 면책된 C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5. 계약명의신탁 해당 여부 (D을 대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사실 C, D을 신탁자로 하고 피고를 수탁자로 한,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D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전문), 그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참조)을 의미한다.

한편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C,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등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금전 지급의 원인에는 변제, 증여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갑4)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 D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일자 경에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C,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명의신탁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C, D과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는 개인회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중 C을 대위한 대위청구는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회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며,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중 D을 대위한 대위청구는 피대위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아람, 판사 이영곤, 판사 이두현

별지